

평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0년 9월 3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0. 9 . 21 평창군수(자치행정과장)
- 나. 회부일자 : 2000. 9. 29
- 다. 상정일자 : 제7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조례특위(2000.9.2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가. 제 안 이 유

- 아파트·공공주택의 신규건축으로 행정리의 설치 및 통폐합이 요구되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나. 주 요 골 자

- 행정리 조정
 - 종전 185개리 ⇒ 187개리(백옥포3리, 황계13리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태영)

- 먼저 관계법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등

행정운영상 필요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설치·통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본 조례는 행정리를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그간 아파트·공동주택 신규건축등으로 주변생활 환경이 크게 변화한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입법절차·형식·기타 자구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답변자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리의 지번, 지적에 관한 사항은?	○ 지번 지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음.
○ 백옥포3리 부분은 어떠한 지역인지?	○ 현재 백옥포1리 4·5반 쪽임.
○ 백옥포1리·3리 에 대한 인구 및 가구는 ?	○ 백옥포3리는 47가구 143명이며, 백옥포1리는 69가구 185명임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필요한 사항 : 없 음

붙 임 : 평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부